



제 417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상향〉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26호)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44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I . 제안경위

1. 강준현의원안

가.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6. 11.

다. 회 부 일 : 2024. 6. 27.

2. 한민수의원안

가. 제 안 자 : 한민수의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강준현의원안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요율은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천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은 급증해왔음. 2023년도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은 59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익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반해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요 대출 차주인 개인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높아지고 있음.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2024년도에 2천억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이 이를 방증한다는 지적임.

게다가 여전히 금융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이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2. 한민수의원안

우리나라는 은행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변동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은행권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2023년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2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음. 이자이익 급증이 혁신의 결과가 아닌 만큼,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법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에 금융회사가 대출금 중 연비율 1천분의 1(0.1%)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는 월 평균대출잔액에 연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 중으로 이는 연간 2 ~ 3천억 수준임.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2023년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면제액은 1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중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현행의 2배 수준) 이상, 연 1천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재 대출금의 연 0.03%¹⁾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보완계정)에 대한 출연비율을 하한 설정을 통하여 연 0.06% 이상으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현 행	강준현의원안	한민수의의원안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생략)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u>1천분의 1</u>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u>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1천분의 1</u> 이하의 범위-----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 5. (생략) ③ · ④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서민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정부 출연, 금융기관 출자·출연, 휴면예금등 출연,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진흥원에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휴면계정), 서민금융보완계정(보완계정), 자활지원계정, 고유계정 등 4개 계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진흥원은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음.

[표 1] 서민금융진흥원 계정구조

구분	휴면계정	보완계정	자활지원계정	고유계정
재원	금융회사등 출연 휴면예금등, 운용수익금 등	정부출연금, 금융회사출연금, 보증료수입금, 구상권행사수입금 등	정부출연금, 기부금품, 휴면계정전입금 등	자본금
용도	휴면금융자산 이관, 원권리자 지급, 찾아주기 활동 등	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공모상품 등	미소금융, 전통시장·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소액보험, 햇살론유스 등	맞춤대출, 행복기금 관리

1) 현행 「서민금융법」 제47조제2항은 대출금의 연 0.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서 이를 연 0.03%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보완계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들이 금융회사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정으로,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보증료 수입금, 채권조달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그 용도는 보증채무의 이행과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임.

○ 보완계정의 수입은 크게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나뉘며(대출금 회수 등 기타 수입 제외), 금융회사 출연금은 다시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공통출연금과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차등출연금으로 나뉜.

- 2023년 기준 정부 출연금은 일반회계와 복권기금을 합하여 1,955억원 수준이고 금융회사 출연금은 2,741억원 수준임.
- 현행 금융회사 출연제도는 2021년 서민금융법 개정 시 법 제 47조에 도입되었는데, 출연의무기간은 2021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으로 규정됨.²⁾

2)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 2. 금융회사의 출연금 / 3. ~ 8. (생략)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3. 상호금융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해

- 공통출연금(제2항)은 금융회사에 대출금의 연 0.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령(§42③)에서 그 비율을 0.03%로 규정하고 있음.³⁾

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개인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률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법률 제18227호(2021. 6. 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은 2026년 10월 8일까지 유효함]

3) 참고로, 유사 제도를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의 0.205%~0.245%를, 기술보증기금에 대출금의 0.115~0.155%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출금의 0.036~0.044%를 출연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3. 기업의 출연금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2. 정부의 출연금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3. 1. 3.>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3. 기업의 출연금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 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차등출연금(제3항)은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해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42④, 별표1)에서는 그 비율을 금융회사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0.50~1.50%로 규정하고 있음.
- 보완계정에 대한 연도별·주체별·출연금별 출연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 보완계정 출연금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계 획)
정 부	복권기금		2,080	2,005	1,675	1,670
	(금융위)일반회계		-	480	280	1,460
금 융 회 사	은행	공통	173	1,063	986	962
		차등	0	15	199	203
		소계	173	1,078	1,184	1,164
	상호금융	공통	49	730	710	638
		차등	0	6	19	26
		소계	49	736	729	664
	보험	공통	28	191	190	191
		차등	0	0	0	0
		소계	28	191	190	191
	여신전문	공통	25	165	157	149
		차등	0	1	1	2
		소계	25	166	159	151
	상호저축	공통	0	56	45	45
		차등	1	70	433	485
		소계	1	126	478	530
	소계	공통	274	2,204	2,089	1,984
		차등	1	93	652	716
		소계	275	2,296	2,741	2,700
총 계			2,355	4,826	4,771	5,910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보완계정은 조성된 재원을 기반으로 저신용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저신용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신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진흥원이 금융회사에 채무를 대신 변제(대위변제)하는 사업임.⁴⁾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대출 신용보증상품이고,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최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신용보증상품이며,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상품이고,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상품임.
 - 2023년 기준 보완계정 사업비 1조 1,253억원 중 근로자햇살론이 8,737억원(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최저신용자특례보증 575억원, 햇살론카드 1.875억원, 햇살론뱅크 66억원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4)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보완계정에 대한 출연은 진흥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대위변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금융권에 환류되는 수익자부담적 성격을 가진다는 시각도 있음.

[표 3] 보완계정 사업 현황

(단위: 억 원, 천 건)

구분		2021	2022	2023
근로자햇살론	지원건수	338	313	346
	지원액	34,597	38,285	34,342
	사업비	1,205	4,917	8,737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건수	-	34	112
	지원액	-	1,002	2,924
	사업비	-	0.1	575
햇살론뱅크	지원건수	6	90	133
	지원액	616	12,361	13,329
	사업비	-	134	1,875
햇살론카드	지원건수	6	20	18
	지원액	76	272	335
	사업비	-	22	66
총계	지원건수	350	457	609
	지원액	35,289	51,920	50,930
	사업비	1,205	5,073.1	11,253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저소득·저신용자는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상품 수요 및 대위변제가 증가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보충이 필요한 반면, 은행은 고신용자 위주의 상품 운용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 하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최근 코로나 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입감소, 시장금리 상승⁵⁾,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인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에 대한 민간 자금공급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음.

5)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연 0.50%에서 2023년 1월 3.50%까지 상승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4.6.)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2/4분기말 0.56%에서 2024년 1/4분기말 0.98%로 상승하였고,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동 기간중 0.50%에서 1.52%까지 약 3배 수준으로 높아졌음.
-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⁶⁾의 경우 2024년 1/4분기말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9.97%,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21%로 나타남.
- 한국은행은 이러한 연체율 상승이 금변 금리상승기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 또한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되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대부업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최고 이자율이 2016년 연 27.9%, 2018년 연 24%, 2021년 연 20%로 순차적으로 인하되고 조달금리가 상승됨에 따라 신용대출을 축소(2018년 11.8조원 → 2023년 4.7조원)하고 담보대출을 확대(2018년 5.6조원 → 2023년 7.8조원)하고 있음.

6)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표 4] 등록대부업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등록대부업자 수 (개)	8,310	8,354	8,501	8,650	8,818	8,579
대출규모 (억원)	173,487	159,170	145,363	146,429	158,678	125,146
신용대출 (억원)	117,691	89,109	73,677	70,298	69,630	46,970
담보대출 (억원)	55,796	70,061	71,686	76,131	89,048	78,177
대부이용자 (만명)	221.3	177.7	138.9	112.0	98.9	72.8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기존에 이들에 대한 민간 신용공급의 일정부분을 담당하던 대부업권 등의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서민에 대한 공공 자금공급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들어 보완계정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대위변제가 급증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표 5] 보완계정 재정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계획)
수입	2,127	8,062	9,318	9,924
지출	1,214 (대위변제 1,205)	5,133 (5,073)	11,313 (11,253)	10,603 (10,444)
수지	+ 913	+ 2,929	△ 1,995	△ 679
계정잔액	9,732	12,419	9,413	10,153

주: 요소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인한 차이로 인하여 전년도 말 계정잔액에서 수지를 고려한 금액과 당해연도 계정잔액이 일부 불일치함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반면, 은행권의 경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신용·고소득자 등 상대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차주를 대상으로 상품을 운용하고 있고, 고금리·대출자산 증가 등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추가적으로 분담하여 사회적 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021년 3월말 기준 은행권은 가계신용대출 잔액의 61.6%를 차지하였으나 이 중 고신용자대출 비중이 84.0%로⁷⁾, 은행이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대부분이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⁸⁾(2021.5.)을 발표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⁹⁾하고 있으나, 최근 고금리 등을 이유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비중은 급감¹⁰⁾하였다는 지적도 있음.

7)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1. 6.

8)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및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말 30% 상회 목표

9) 2024년 1분기 기준: 케이뱅크(33.2%), 카카오뱅크(31.5%), 토스뱅크(36.2%) / 은행연합회 공시자료

10) 이데일리, “5대 은행, ‘중금리 대출’ 1년새 절반 줄었다”, 2024. 3. 13.

- 한편, 국내은행은 2023년 59조 2,000억원의 이자이익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0년~2022년 연도별 이자이익 41조 2,000억원, 46조원, 55조 9,000억원에 비하여 각각 44%, 29%, 6% 증가한 수치임.¹¹⁾¹²⁾
- 한국은행은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중 증가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중 약 40%가 예대금리차 확대에 의한 것으로, 60%는 대출자산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였고,¹³⁾ 금융감독원¹⁴⁾ 역시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증가와 순이자마진 상승 등에 기인하여 2022년과 2023년 이자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음.¹⁵⁾
- 다만, 은행연합회는 최근 10년간 예대금리차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임.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2024. 3. 15.

12) 참고로, 금융업권별 이자순수익 및 순이익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표] 금융업권별 이자순수익 및 순이익 규모(2023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은행	상호금융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이자순수익(이자손익)	592,000	-	-	-	53,993
순이익	213,000	20,407	133,578	52,849	△5,559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재구성)

13) 노유철·정서림,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제 2022-39호, 한국은행, 2022. 10. 18., 2쪽.

14) 금융감독원, “2023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4.3.14.), “2022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3.3.16.)

15) 이자수익자산(평잔)은 2021년 2,757.8조원에서 2022년 3,041.7조원으로 283.9조원(10.3%) 증가하였고, 순이자마진(NIM)은 2021년 1.45%에서 2022년 1.62%로 0.17p% 상승하였음.

[표 6] 최근 10년간 예금은행 예대금리차 추이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규취급액 기준	1.83	1.79	1.89	1.92	1.79	1.70	1.75	1.80	1.52	1.48
잔액 기준	2.29	2.15	2.19	2.30	2.31	2.17	2.05	2.21	2.55	2.53

주: 신규취급액 기준은 대출평균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수신금리를 제한 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재구성)

□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공통출연금 출연비율을 현행 대출금의 0.03%에서 은행에 한하여 0.06%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이에 따르면 은행권의 보완계정 출연액은 현행 985억원(2023년 기준)에서 1,970억원(0.06%)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정부는 최근 금융회사의 공통출연금 출연비율을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연 0.03%에서 은행 0.035%, 비은행 0.045%로 상향¹⁶⁾하는 내용¹⁷⁾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¹⁸⁾하였고, 은행권도 “민생금융지원방안”(2024.3.27.)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하기로 하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보임.

16)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출연요율 차등은,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2024년중 2,214억원을 자체적으로 출연하기로 한 점(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2024.3.27.)을 고려한 것임.

17)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 출연액은 현행 985억원에서 1,14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18) 입법예고 기간: 2024. 5. 21. ~ 2024. 7. 1.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서민금융법」에 은행권 출연요율의 하한을 설정하여 인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함께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출연요율 인상 시 정책서민금융 재원이 확대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기반이 보다 안정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출연요율 하한 규정 시 출연요율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제한되며, 정부가 이미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한시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 은행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데, 가산금리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법적비용에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어, 출연의무가 부과될 경우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상향조정할 가능성¹⁹⁾이 있음.

19) 이와 같은 가산금리 상향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① ‘대출금리 모범기준’에서 동 출연금이 가산금리에 포함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하거나, ②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35)와 같이 법률 개정을 통해 동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표 7]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기준

기준 금리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 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코픽스 등의 지표금리	
가산 금리	신용프리미엄	차주 신용등급, 담보종류·담보비율, 대출만기, 업종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가능한 예상 손실 비용
	리스크프리미엄	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기준금리 (지표금리) 간 차이
	유동성프리미엄	기준금리 변동주기보다 대출 계약만기가 장기인 변동 금리대출에 적용되는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자본비용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 본의 기회비용
	업무원가	인건비 및 물건비 등을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해 산정
	법적비용	신보 등 출연료,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예치 금 등
	목표이익률	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부수거래 감면금리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 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본부·영업점장조정금리	-

(자료: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 다음으로, 은행연합회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출연요율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치 않으며, 유사한 타 부담금에도 전례가 없고, 은행의 서민금융 재원 출연실적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그간의 노력²⁰⁾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업권 중 은행의 출연요율만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0) 은행권은 법정출연 이외에도 사회적책임 강화방안('23년~'26년, 2,400억원), 민생금융지원방안('24년, 2,214억원), 국민행복기금 초과 회수금 기부('23년, 165억원) 등을 통해 4,779억원을 임의출연(기부금) 형태로 제공 중이라는 입장임.

[표 8] 은행권의 보증기관 출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진흥원	법정	-	-	-	173	1,078	1,184
	임의	-	-	-	-	-	665
	소계	-	-	-	173	1,078	1,849
신보	법정	8,126	8,428	9,407	9,847	10,484	11,679
	임의	679	1,133	1,012	374	603	1,416
	소계	8,805	9,561	10,419	10,221	11,087	13,095
기보	법정	4,827	4,888	5,460	5,651	6,079	6,723
	임의	675	1,110	1,253	1,283	681	1,004
	소계	5,502	5,998	6,713	6,934	6,760	7,727
지역신보	법정	824	855	1,119	1,709	1,849	2,084
	임의	1,481	2,182	5,938	2,115	2,278	3,122
	소계	2,305	3,037	7,057	3,824	4,127	5,206
주신보	법정	6,101	6,784	6,562	7,664	8,894	9,472
	임의	-	-	-	-	-	-
	소계	6,101	6,784	6,562	7,664	8,894	9,472
농신보	법정	930	938	1,036	1,441	1,540	1,674
	임의	-	-	-	-	-	-
	소계	930	938	1,036	1,441	1,540	1,674
총계	법정	20,808	21,893	23,584	26,485	29,924	32,816
	임의	2,835	4,425	8,203	3,772	3,562	6,207
	소계	23,643	26,318	31,787	30,257	33,486	39,023

(자료: 은행연합회)

- 다만,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4)²¹⁾은 부담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 부과요율 등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출연요율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없음.

21)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또한, 부담금 부과요율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한 입법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관련 사업자의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이상 1만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금에 대한 하한을 정하고 있음²²⁾.

- 동시에 수익성이 열악하거나 건전화 평가가 우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만분의 35 미만의 비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음.

○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출연요율의 하한을 설정할 경우, 위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자발적인 서민금융 재원 출연 등이 있는 경우 하한보다 낮게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개정안의 부칙과 관련하여 두 개정안 모두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경과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표 9] 개정안의 부칙 규정

강준현의원안	한민수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2항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아니한 제47조제2항제1호의 금융회사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강준현의원안²³⁾의 경우 “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종전 규정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않은 금융회사는 그 출연 종료 시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²⁴⁾ 이에 따르면 현행 조항의 유효기간인 2026년 10월 8일까지 현행 출연요율 조항인 0.03%의 출연비율이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음.

- 개정안은 출연요율의 하한을 신설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출연요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는 점, 실무상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며, 시행령에

23) 한민수의원안의 경우 별도의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음.

24) 제2조(대출금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2항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아니한 제47조제2항제1호의 금융회사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서 구체적인 적용례를 둘 수 있다는 점²⁵⁾ 등을 감안해, 위 경과 조치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보완계정에 대한 공통출연금 출연요율 하한을 설정하는 것은 고신용자 위주의 상품 운용으로 다른 업권 대비 높은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계의 신용 대출 규모 감소에 대응하여 서민금융 여신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은행의 수익성 악화 시 출연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6

25) 정부가 입법예고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출연금에 대한 적용례(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를 두고 있음.